

미국 작물보험의 유형 및 현황 *

윤성은·차원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미국 작물보험 발전과정 1)

미국의 작물보험²⁾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약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38년 농업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연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를 설립하였다. FCIC의 설립목적은 첫째, 흉작이나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보장, 둘째, 식량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셋째, 농업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정적 농기구매력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 성장 및 고용 유지 등이다(최경환 외, 2010). 사업 초기 농업보험 프로그램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작물과 주요 생산지역에 국한되었으나 1980년 연방작물보험법에 의해 다수 작물과 다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1960~1970년대 만들어진 농업법에 의해 무상으로 응급재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80년 연방작물보험법은 보험료의 30%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 (graceyon@krei.re.kr, 02-3299-4393).

1) USDA/RMA, 2012, A History of the Crop Insurance Program (www.rma.usda.gov) 참조

2) 미국에서는 농업보험 초기부터 작물보험(crop insur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작물보험은 생산량 감소를 보전하는 수량보험(yield insurance), 농가수입을 보전하는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 기타보험으로 구분됨(최경환, 2011).

1980년 작물보험법 실행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작물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당초 국회가 목표한 면적가입률 50%에는 미달하였다(1991년 기준 32%). 1989~1993년 기간에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제정한 응급재해법(ad hoc disaster bill)은 정부의 무상재해지원과 작물보험사업이 경합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생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1994년 연방작물보험법 개혁을 시행하였다. 본 개혁법은 농업인이 가격지지프로그램, 대출, 기타 지원 등과 같은 각종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물보험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하였다.³⁾ 따라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자 정부는 대재해보장(catastrophic coverage, CAT)을 신설하여 CAT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보조하였다. 생산자는 CAT보장을 받기 위해 지역(county) 내에서 한 작물 당 50달러(현재 300달러)의 운영비를 지불하며, 또한 CAT의 기본적인 보험 수준보다 더 높은 보장수준을 위해 추가보증보험(Buy Up)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1994년 농업보험 개혁으로 인해 작물보험 참여 농업인이 현저히 증가하여 보험가입 면적이 1998년 180백만 에이커에 달했다. 이는 1988년 보험가입 농지면적의 3배이며, 1993년의 2배 이상의 면적이다. 1998년 보험금액(liability)은 280억 달러이며 보조금을 합한 총보험료(total premium)는 약 950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96년 위험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 RMA)을 설립하여 미국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FCIC의 프로그램과 기타 비보험 관련 위험관리 및 교육 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2000년 국회는 민간부문이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농업인의 고보장보험상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보조율을 인상하였다.

2008년에는 직접지불형태의 ACRE(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가 FSA(Farm Service Agency)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RMA가 통합작물보험정책(the Combo Policy)을 개발하여 2011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다(최경환 외, 2010).

3) 정책지원대상자의 작물보험 의무가입은 1996년에 해지되었지만 현재까지 기타지원혜택(other benefits)을 수락한 농업인은 작물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 재해지원 혜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함.

2. 미국 작물보험 추진체계 4)

미국의 작물보험은 연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실시 주체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위험관리국(RMA)이 담당하고 있으며 작물보험의 판매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FCIC는 민간보험사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을 통해 대재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한다.

RMA는 미국농무부(USDA)의 작물보험 담당국으로 작물보험 관련 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고, 신규 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RMA의 주요 기능으로 보험료율 및 작물가격 설정, 민간보험사의 재보험 손실 및 관리 운영비용 지급, 재정 및 시장 동향의 검사 및 관찰기능이 있다. RMA는 작물보험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역사무소(RMA Regional Office, RMA RO)를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의 연방작물보험 모니터링, 기초자료 수집, 프로그램의 현지 적용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FCIC와의 협약을 토대로 보험모집인(agents)을 통해 농업인에게 작물보험을 판매 및 컨설팅하고, 농업 손실 발생 시 손해사정사(adjusters)를 통해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민간보험사는 국가작물보험서비스(National Crop Insurance Services, NCIS)를 설립하여 작물보험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및 추진하고 있다. NCIS는 회원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사들이 다양한 작물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미국 작물보험 운영체계 및 역할

기 관	역 할
위험관리국, RMA (Risk Management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보험 관련 제도 제정 및 개정 - 신규 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현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 - 정부 및 민간단체 협조 하에 위험관리기법 연구 및 교육 - 보험사와 협조하여 보험통계 및 인수정책 수립
연방작물보험공사, FCIC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보험 확대 관련 정책 수립 - 민간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재보험 담보 제공 - 보험료율, 보험기간 및 조건 설정 - 예상시장가격 결정
민간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보험상품 컨설팅 및 판매 - 손해평가 및 보상금 지급

자료: 최경환 외(2004) 참조

4) 최경환(2011), 「미국의 작물수입보험 실태와 시사점」 참조

3. 미국 작물보험 유형 5)

미국 작물보험의 유형은 작물보험의 시행주체, 보장 대상, 보험 보장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작물보험의 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정책보험(정부)과 민간보험(민간보험사)으로 구분된다. 정책보험에는 연방정부가 의회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연방작물보험(MPCI)이 있으며, 민간보험에는 우박보험(Crop-Hail)이 있다. 다음으로 보험이 보장하는 대상이 산출물의 수량인지 품목별 수입인지에 따라 수량보험(Yield Insurance)과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으로 나뉘며, 마지막으로 보험의 보장기준에 따라 개인보험과 그룹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⁶⁾

미국 농무부 위험관리국(RMA)이 제시하고 있는 보험계획(Insurance Plans)은 18가지로 작물보험을 수량보장보험, 수입보장보험, 달러보장보험, 기타보험으로 분류하여 각 보험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수량보장보험

수량보장보험은 농업인의 생산량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산자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과거수량보장보험(Actual Production History, AHP), 수확량보호보험(Yield Protection, YP)과 지역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수량보장보험(Group Risk Plan, GRP)이 있다.

과거수량보장보험(AHP)은 가뭄, 과습, 우박, 태풍, 서리, 곤충과 같은 재해로 인해 생산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농업인은 보험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평균수확량 수준을 50~75%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상가격을 RMA가 매년 구축한 작물 가격 예측가격의 55~100%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수확량에 평가된 생산량을 더한 것이 보험가입수량보다 적으면, 그 차이에 기초하여 보험금이 지불되고 이때 단위당 가격은 농업인이 보험 가입 시에 정한 예측가격 비중 수준으로 계산된다.

수확량보호보험(YP)은 APH보험과 거의 동일하나 다만 보장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예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상가격은 농산물거래가격보험(Commodity Exchange Price Provisions)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선물계약의 일일정산가격에 기초하고 있다. 생산자는 본인이 원하는 예상가격의 비중을 55~100% 수준에서 결정한다.

지역수량보장보험(GRP)은 지역(county) 내에서 보험 작물의 광범위한 생산 손실을

5) USDA/RMA(2013), Crop Policies and Pilots: Overview 및 최경현(2011), 「미국의 작물수입보험 실태와 시사점」 참조

6) 최경현(2011), 「미국의 작물수입보험 실태와 시사점」.

보상하는 위험관리도구로, GRP보험의 손실 규정 기준은 지역수량지수이다. 보험금은 국가농업통계서비스(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가 확정한 보험 작물의 추정지역수량지수가 생산자가 정한 촉발(trigger)수량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지불된다. 지불금은 개개 생산자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보장수준은 지역기대수확량의 90%까지 가능하다. GRP보험은 개개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에 비해 업무처리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이 보험은 작물 생산량이 지역의 평균생산량과 유사한 경향을 따르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개별 농업인이 생산량 손실을 입었다더라도 지역 생산량이 평년과 유사하다면 보상 받을 수 없다.

3.2. 수입보장보험

생산자의 수입(revenue) 손실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종류에는 과거수입보장보험(Actual Revenue History, ARH), 조정총수입보험(Adjusted Gross Revenue, AGR), AGR-Lite, 지역수입보장보험(Group Risk Income Protection, GRIP), 수입보호보험(Revenue Protection, RP), 시장가격제외수입보호보험(Revenue Protection With Harvest Price Exclusion, RPHPE) 등이 있다.

과거수입보장보험(ARH)은 과거수량보장보험(APH)과 유사한 보험이나 차이점으로 는 수량이 아닌 수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조정총수입보험(AGR)과 AGR-Lite는 일부가축수입을 포함한 농가의 평균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장함으로써, 개별 작목들의 수입보다는 농가의 전체적인 수입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수입보장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과세 양식 정보와 당해 연도 농가의 예측수입정보를 활용한다.

지역수입보장보험(GRIP)은 지역(county) 내에서 보험작물의 광범위한 수입손실을 보상하는 위험관리도구이다. GRIP보험은 NASS가 발표한 보험작물의 추정수량지수에 수확기 가격을 곱한 지역수입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수입지수가 생산자가 결정한 촉발수입지수 이하일 때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GRP와 다르게 GRIP는 추정수량지수와 수확기 가격 조합, 즉 지역수입지수가 촉발수입지수 이하를 초래하는 한 보험작물의 수확량의 감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GRP와 동일하게 지불금은 개별 생산자의 수확량과 수입과 별개이며 보장수준은 지역기대수입의 90%까지 가능하다. GRIP 보험 또한 개별 생산자의 작물 생산량이 지역의 평균생산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을 때 작동된다.

수입보호보험(RP)은 가뭄, 과습(過濕), 우박, 태풍, 서리,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과, 기대가격과 수확기 시장가격 차이로 인해 수입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다. 생산자는 보장받기를 원하는 평균수확량 규모를 50~75%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입손실 보전에 있어 예상가격과 수확기 시장가격은 농산물거래가격보험(Commodity Exchange Price Provisions)에 따라 결정되는 규모의 100%이며, 특정선물계약의 일일정산가격에 기초하고 있다. 보험규모는 예상가격과 수확기 시장가격 중 높은 것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만일 수확량에 수확기 시장가격을 곱한 감정(appraised)생산량을 더한 것이 보험보장규모보다 작다면 생산자는 그 차액에 기초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확기 시장가격제외수입보호(Revenue Protection With Harvest Price Exclusion)보험은 수입보호보험(RP)과 매우 유사하나 보험 보장규모가 예상가격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수확기 시장가격이 예상가격보다 높더라도 보험보장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다.

3.3. 달러보장보험

달러플랜(Dollar Plan)보험은 수확량 감소를 야기하는 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수경재배달러보장보험(Aquaculture Dollar Amount of Insurance, AQU), 달러보장보험(Dollar Amount of Insurance, DOL), 고정달러보장보험(Fixed Dollar Amount of Insurance, DOL), 수목달러보장보험(Tree Based Dollar Amount of Insurance, TDO), 수량달러보장보험(Yield Based Dollar Amount of Insurance, YDO) 등이 있다. 보험규모는 특정지역의 작물 재배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작물의 연간 평균가치가 보험규모보다 작은 경우에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는다. 보험가입자는 최대보험규모의 일정 비율을 CAT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보장수준을 구입할 수 있다.

3.4. 기타보험

가축보험(Livestock Policies)은 가축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보장수준은 시카고 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Group)의 선물 및 옵션 가격으로부터 결정된다. 가축보험은 돼지, 소, 양, 젖소(우유)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으며, 생산자는 보험기간과 보험 대상 가축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가축보험은 크게 가축위험보호(Livestock Risk Protection, LRP)와 가축총수익(Livestock Gross Margin, LGM)으로 구분된다. LRP는 시장가격하락에 대비한 것으로 말기가격이 생산자가 결정한 초기가격보다 낮

을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LGM은 가축 가격과 사육비용의 차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 생산자의 실제총수익이 보험 가입 시 기대한 총수익보다 낮을 때 보험금을 지불한다.

강우량지수보험(Rainfall Index, RI)은 국가해양대기행정기후예측센터(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s Climate Prediction Center)가 수집하고 관리한 기상자료에 기초하여 특정지역의 강우량이 특정기간 동안 장기평균에 비해 얼마나 많았는지를 측정한다. 이 보험 프로그램은 날씨 패턴에 따라 미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시범프로그램은 선택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초목지수보험(Vegetation Index, VI)은 1989년 이래 위성으로 관측한 지구의 녹화수준(greenness of vegetation)에 기초한 것으로 미국 전 지역을 기후패턴에 따라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부 지역(county)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자는 일부 작물보험에 있어 기본 보장수준에 더해 추가적인 보장(Buy-Up)을 받을 수 있다. 보험부가증서 및 옵션(Policy Endorsements⁷⁾ and Option)을 통해 보완적인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보험 판매 이전에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재해위험보호부가증서(Catastrophic Risk Protection Endorsement, CAT Coverage)와 고위험대체보장부가증서(High-Risk Alternate Coverage Endorsement, HR-ACE)가 있다. CAT Coverage는 작물 손실률이 50%를 초과할 때 RMA가 확정한 농산물가격의 55%를 연방정부가 보상하는 것이다. 단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생산자는 각 카운티의 개개 작물 당 300달러의 운영비를 지불해야 한다. HR-ACE는 고위험토지와 저위험토지를 모두 경영하는 생산자가 저위험토지 보장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고위험토지에 대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보험제도이다. 이는 2013년 작물연도부터 시작되며 해당 작목은 일부지역의 옥수수, 대두, 밀, 수수 등이다.

4. 미국 작물보험 연앙

2000~2012년간 미국 작물보험의 실적은 <표 2>와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지난 12년 동안 미국 작물보험은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약 230% 성장하였다. 동기간 가입건수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가입면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가입건수 당 보험가입면적이 증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미국 작물보험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면적 2억 7,144만 에이커, 총 보험가입금액

7) Endorsement: 보험증서에 부과되어 보험내용을 추가하거나 변화시키는 증서

1,134억 달러, 총보험료 106.9억 달러, 국가보조 67억 달러, 보험금 146억 달러로 2000년 대비 각각 31.5%, 230%, 320%, 605%, 465% 증가하였다.

2012년 보험가입금액은 1,134억 달러로 작물보험 실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 작물보험 가입면적은 소폭(2.1%) 상승하였으나, 옥수수 및 콩 등 농산물 가격이 급증하여 보험금액과 총 보험료는 각각 43.8%, 54.5% 증가하였다. 한편 보험금은 2010년 이후 계속되는 대형 가뭄 및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 2011, 2012년 보험금 지불액이 전년대비 각각 149%, 38.4% 급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총 보험료와 국가보조는 감소한 반면 생산자에게 지불한 보험금은 38.4% 증가하였다. 이는 2012년의 기록적인 자연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2012년 1.37의 손해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작물보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난 2003~2011년 동안 손해율 1.0 미만으로 안정적인 운영모습을 보여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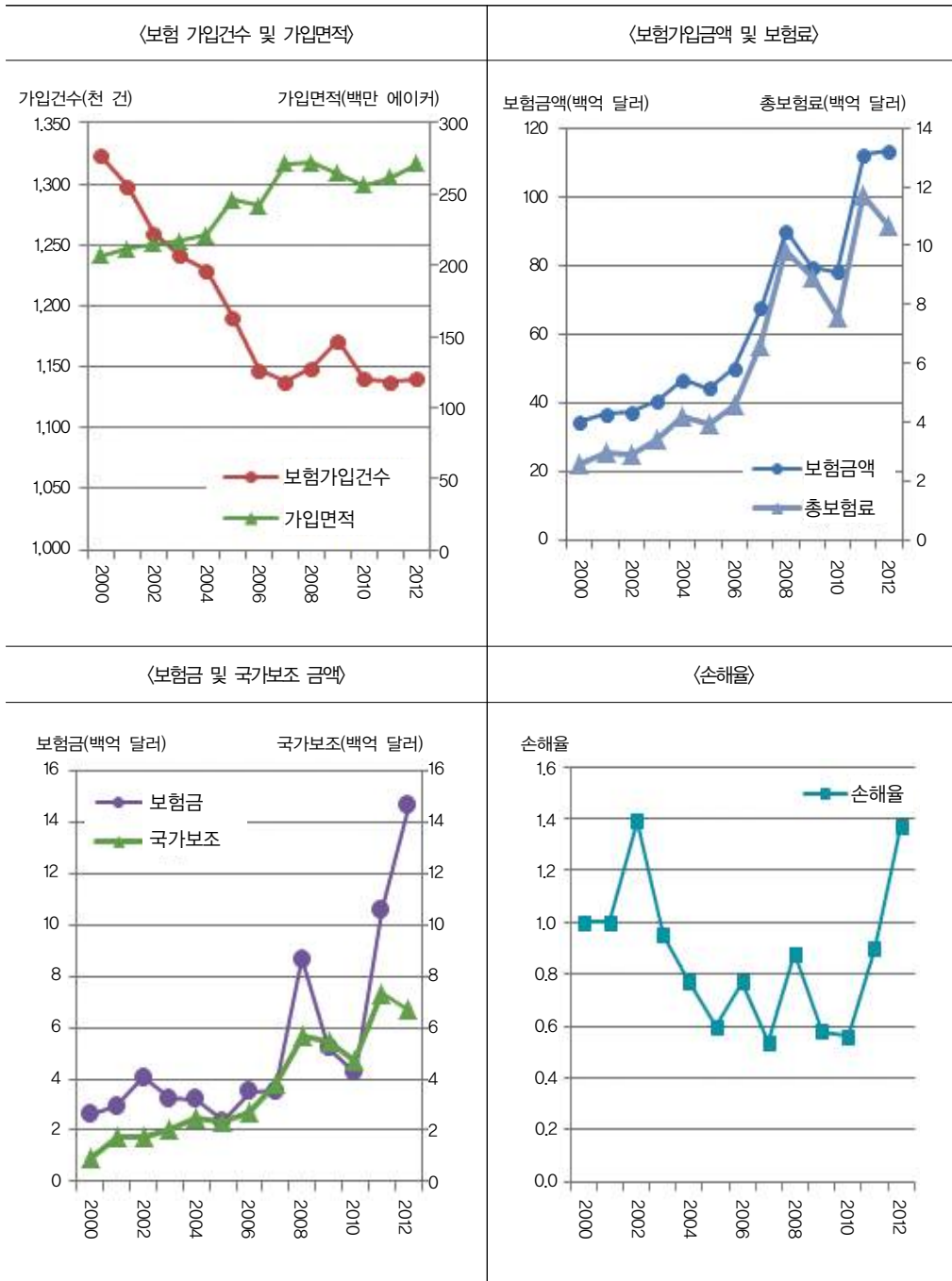
표 2 미국 작물보험 추진 실적

단위: 천 에이커, 천 달러

연도	보험가입건수	가입면적	보험가입금액	총보험료	국가보조	보험금	손해율
2000	1,323,243	206,466	34,443,753	2,540,163	951,191	2,594,835	1.02
2001	1,297,925	211,329	36,728,588	2,961,847	1,771,740	2,960,125	1.00
2002	1,259,484	214,865	37,299,303	2,915,944	1,741,410	4,066,733	1.39
2003	1,241,468	217,409	40,620,507	3,431,360	2,042,031	3,260,807	0.95
2004	1,228,847	221,020	46,602,280	4,186,133	2,477,424	3,209,724	0.77
2005	1,190,608	245,856	44,258,916	3,949,231	2,343,828	2,367,323	0.60
2006	1,147,754	242,082	49,919,480	4,579,539	2,682,006	3,503,536	0.77
2007	1,137,654	271,634	67,339,911	6,562,119	3,823,354	3,547,569	0.54
2008	1,149,258	272,260	89,896,534	9,851,305	5,690,910	8,679,943	0.88
2009	1,171,624	264,708	79,548,656	8,948,513	5,425,516	5,218,631	0.58
2010	1,140,536	256,156	78,088,773	7,593,408	4,710,769	4,251,288	0.56
2011	1,137,905	261,627	112,287,415	11,733,298	7,315,685	10,585,096	0.90
2012	1,140,341	271,442	113,447,146	10,693,359	6,712,378	14,652,243	1.37

자료: USDA/RMA, 2012, Summary of Business Report, www.rma.usda.gov.

그림 1 미국 작물보험 추진 실적



자료: USDA/RMA, 2012, Summary of Business Report, www.rma.usda.gov.

표 3 2012년 주요 품목별 작물보험 현황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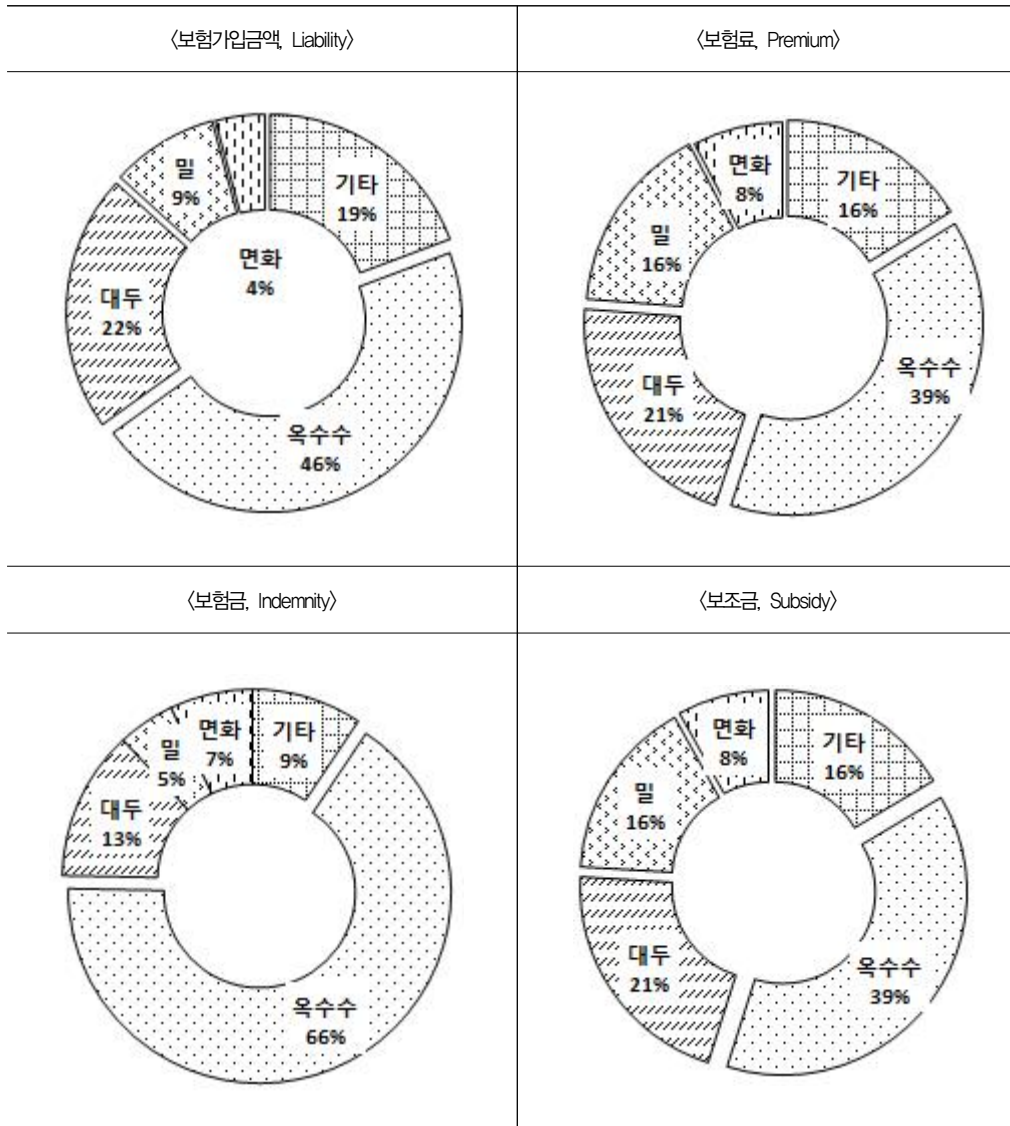
품목	보험가입금액 (Liability)	보험료 (Premium)	보조금 (Subsidy)	보험금 (Indemnity)	손해율 (Loss ratio)	가입면적 비중(%)	
						CAT	Buy-Up
옥수수	51,876,579	4,158,445	2,581,034	9,661,486	2.32	4.7	95.3
대두	24,706,010	2,255,381	1,412,936	1,874,453	0.83	5.4	94.6
밀	10,247,043	1,723,820	1,072,895	711,297	0.41	5.7	94.3
면화	4,739,634	818,364	541,641	1,032,273	1.26	10.8	89.2
묘목	1,955,547	42,262	33,851	2,848	0.07	0.0	0.0
아몬드	1,232,614	48,569	32,361	5,930	0.12	44.4	55.6
오렌지	1,112,988	18,663	14,504	433	0.02	100.0	0.0
감자	1,102,988	85,995	59,340	26,102	0.30	55.3	44.7
쌀	1,091,835	54,892	38,161	39,395	0.72	38.6	61.4
사탕무	1,070,926	60,237	32,959	22,445	0.37	4.9	95.1
수수	1,032,215	207,532	134,043	386,787	1.86	5.3	94.7
포도	997,709	39,751	24,928	17,113	0.43	50.3	49.7
땅콩	887,279	85,992	50,913	22,792	0.27	14.8	85.2
기타	11,393,770	1,093,448	682,806	848,883	2.05	6.3	93.7
합계	113,447,145	10,693,359	6,712,378	14,652,242	1.37	6.3	93.7

자료: USDA/RMA, 2012, Summary of Business Report, www.rma.usda.gov

2012년 보험가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 상위 주요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면화, 묘포(nursery, 苗圃), 아몬드, 오렌지, 감자, 쌀, 사탕무, 수수 등이다. 13개 주요 품목별 작물보험 가입 상황을 <표 3>과 <그림 2>를 통해 살펴보면 옥수수, 대두, 밀, 면화가 전체 작물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 중 각각 80.7%, 90.6%의 비중을 차지하여 작물보험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험료에서 각 작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와 유사하여 옥수수가 38.9%로 가장 크고, 대두(21%), 밀(16%), 면화(7.7%), 기타(19.3%)이다. 한편 작물보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인 옥수수의 2012년 손해율이 2.32로 2012년 작물보험의 전체 손해율(1.37)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기본보장보험(CAT)과 추가보장보험(Buy-Up)으로 구분한 결과 대다수의 작물에서 추가보장보험에 가입한 농지면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작물 가입면적의 93.7%가 추가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미국 생산자들이 보장수준이 높은 보험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2년 주요 품목별 작물보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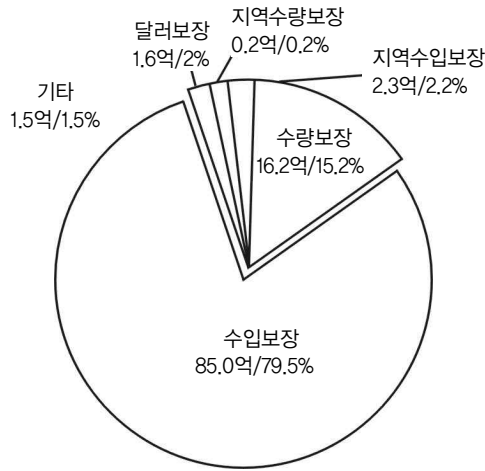


자료: USDA/RMA, 2012, Summary of Business Report, www.rma.usda.gov

2012년 실시된 18개의 보험을 수량보장보험, 수입보장보험, 지역수량보장보험, 지역수입보장보험, 달러보장보험, 기타(특별 프로그램)보험으로 나누어 각 보장유형별 보험료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수입보장보험의 보험료가 85억 달러로 전체 보험료 중 79.5%를 차지하는 가운데 수량보장보험이 16.2억 달러로 15.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 수입보장보험료(56억 달러, 전체 보험료의 73.8%)에 비해 보험료 측면에서 약 51% 상승한 것으로 전체 작물보험 프로그램 중 수입보장보험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2012년 작물보험 보장유형별 보험료 분포



자료: USDA/RMA, Summary of Business Report.

5. 시사점

이제까지 미국 작물보험의 추진체계와 더불어 보험유형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작물보험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대규모로 성장하여 생산자의 농업소득을 자연재해 및 시장변동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작물보험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농작물보험의 중요성이다. 미국은 최근 대규모 가뭄 및 허리케인 샌디 등으로 인하여 2012년 8월 32개 주 약 1,600개의 카운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의 농업생산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잦은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 또한 2012년 태풍 불라벤 등 빈번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였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는 현 시점에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재

해 및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농작물보험을 품목 및 보장범위 측면에서 더욱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에 5개 품목(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시설상추, 시설부추, 시설 시금치)을 추가하여 현행 35개 품목에 더해 총 4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작물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가 민영보험사들의 위험 분산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산량 손실과 가격하락을 동시에 보장하는 농업수입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은 2012년 기준 수입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약 80%로 작물보험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농업인의 소득은 농업생산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가속화되는 농산물시장 개방 및 작황에 따른 시장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수입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농작물보험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제11차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농어민의 보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작물보험가입을 직불제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빈번한 기상이변 및 시장개방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로 앞으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 75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작물보험은 추진 체계 및 보험실적 관련 통계 구축 등에 있어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작물보험의 다양한 유형 및 동향을 참고하여 한국의 농업상황에 적합한 보험정책수립 및 상품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정원호, 2012,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KREI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외, 2004,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C200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2006, 「미국 작물보험의 확대과정과 시사점」, D2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채광석·윤병석, 2010,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R6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2011, 「미국의 작물수입보험 실태와 시사점」, D3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2012,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 KREI 농정포커스, 농촌경제연구원.

참고사이트

USDA/RMA (www.rma.usda.gov)